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2020. 10. 29.(목) 10:30~12:45

2. 장 소: 온라인 화상회의 진행

3. 출석인원: 별지 기재와 같음

4.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의 장 _____

간 사 _____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 회의록

2020. 10. 29.

운영지원단

I. 개요

- 일시: 2020. 10. 29.(목) 10:30~12:45
- 방식: 온라인 화상회의 진행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김순석, 김진석, 박균성, 오승이, 윤준, 이미경, 이찬희, 최한돈, 허부열(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이창열(간사), 고원혁, 서현웅(이상 서기)
- 분과위원회 및 운영지원단 등
 - 권순형(법관인사 분과위원회)
 - 최수환, 홍동기(이상 운영지원단장), 박노수, 안희길, 김도현, 유제민, 배진호, 강정현, 이재선(이상 운영지원단원)
 - 박천규(조직심의관)

II. 의사개요

1.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안타깝지만 코로나19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아 오늘 회의도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게 되었음
 - 오늘 회의에서는 본래 법원장 추천제 관련 안건 하나만 진행 예정이었으나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 관련 안건을 시급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에 선발 보직에 관한 추가 연구·검토를 회부하기 위한 논의 역시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음



- 9월 말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10월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였는데, 위원 구성에 관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는 참에 오승이 위원님께서 적절히 의견을 주셔서 위원님들께 위원 구성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안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2. 분과위원회 구성 경위 보고

가. 기초보고

- 이창열 기획총괄심의관(사법행정자문회의의 간사),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제2기 위원 구성 경위에 대해 보고함

나. 논의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이에 대한 이찬희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이번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진행하며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함. 지난 제1기 분과위원회 구성 시에는 첫 번째라서 그런지 신청 및 추천이 많았던 반면, 이번에는 그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신청 및 추천보다는 여러 경험과 담당 업무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게 되었음
-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성 비율을 일정 부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는데, 특히 유감스럽고 아쉬운 부분은 당사자가 고사를 하는 등 사정이 여의치 못해 위원장 중에 여성이 아무도 없다는 점임
-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누구로 위촉할지 고심하다가 법관도 변호사도 아닌 외부위원 중 한 분을 위원장으로 지명함으로써 중립성을 갖추고자 노력했음. 이찬희 위원님 관찮으신지?

○ 이찬희 위원

- 위원장님께서 중립을 지키시며 잘 운영하리라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모두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 좋은 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분들 가운데 여성이 한 명뿐이었고 변호사시험 출신이 아무도 없어 고법판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면서 변호사 출신 법관을 위원으로 임명했다는 점을 지난 회의에 이어 말씀드리고 싶음
- 아직까지는 사법행정자문회의 홈페이지에 신규 위원 명단이 게시가 안 되었으나, 오늘 회의 이후 바로 게시를 하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오승이 위원
 - 기존 TF 구성과 같이 지명 방식에 의해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아 관련 질의를 드리게 되었음. 하지만 회부 안전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했다는 말씀은 결국 기존과 다를 바가 없는 것과 같은데 이를 법원 내부에 널리 알려도 될지 여쭙보고 싶음
 - 의장님께서도 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공식적인 추천권을 부여하는 경우 위원을 구성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함.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권이 공식화되는 경우 미리 추천 의뢰를 받고 게시판을 통한 공고를 통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여 더 많은 인원을 추천할 수 있음. 하지만 지금은 추천권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천 의뢰가 올지 알 수 없고, 의뢰가 없는 상태에서 추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으며, 막상 추천 의뢰가 와도 짧은 시간 내 추천 절차를 진행하느라 어려움이 있었음
 - 의장
 -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경위를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법관들에게 알리고, 회의록에도 기록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고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함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위원 추천권을 공식화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등의 추천 위원의 수가 많아지는 경우 성비 등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몇 달 전부터, 추천 인원도 적절히 정해서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위원 명단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NGO 분야에서는 장애인연대의 대표 1명밖에 없다는 점이 눈에 띄
-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의 외부위원은 변호사 4인, 신문사 편집위원, 한국법학원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인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아쉬움

○ 의장

-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의 경우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것처럼 법관 위원 측과 변호사 위원 측의 의견이 달라 양 측에서 각자 외부위원 1인씩 추천을 받다보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장애인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제시던 제1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장애인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나름 호응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홍보가 부족한지 관심이 모자랐는지 몰라도 외부 시민단체 또는 NGO 관련 분야 인원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는 점은 본인 역시 마찬가지임. 앞으로 위원 구성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안건이 진행될 때마다 필요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음

3.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 방안

가. 기초발제

▣ 박천규 조직심의관 기초발제

- ‘16호봉 이상 일반법관’으로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 여부를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이에 대한 이미경 위원의 답변, 의장의 질문 및 조직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들으신 바와 같이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규칙을 개정해야 하므로 대법관회의의 의결이 필요함
- 고호봉 법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보수역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환경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음. 게다가 시뮬레이션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법조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고, 그 이후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가 임용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고호봉 법관 인원이 증가하여 보수 역전의 위험은 더 빨리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 법관의 급여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고 논의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음. 이미경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미경 위원
 - 내용이 너무 상세한 사항이라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관련하여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의 성과금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 의장
 - 법원공무원의 성과금은 법관과는 성격이 다른 것 같음. 법원공무원의 경우에도 법관과 같이 고호봉화에 따라 보수역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 조직심의관
 - 6급 이하 법원공무원의 경우 1년에 2번 직무성과 등을 기준으로 S, A, B 등급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고호봉화나 보수역전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함. 다만 그 지급 확대의 필요성의 하나로 고등부장에 대한 전용차량 폐지로 인한 예우상의 변화를 들고 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함
 - 16호봉 이상 법관을 직무성과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고등부장뿐만 아니라 16호봉 이상의 지방부장 및 향후 승급 예정인 고법판사들에게도 직무성과금이 지급되게 되고, 이 경우 고등부장들은 전용차량이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보수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고등부장이 아닌 지방부장 등과 직무성과금을 나눠 받게 되는 결과가 됨

- 자문회의에서 전용차량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를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하여 보고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부장에 비해 약 20만 원 덜 받던 직급보조비를 원상회복하는 것 외에 추후 보완조치가 없는 경우 결국 고등부장은 그 지위가 지방부장으로 강등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고등부장은 전용차량을 잃는 대신 지방부장과 보수는 동일해지고, 취업 제한, 재산 공개, 명예퇴직금 수령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등부장의 박탈감이 우려됨
- 시행 예정인 법원조직법 부칙에서 종전 고등부장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종전 고등부장에 대한 처우 및 권리의무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고등부장에 대한 전용차량을 폐지하면서 실질적인 보완조치가 없는 경우 부칙이 규정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전용차량 이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금전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차량 유지비, 유류비, 운전원 등을 포함하면 약 월 500만 원정도의 혜택은 받았다고 할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전용차량 지급의 혜택은 없어지고 보수는 지방부장과 같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고등부장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음
- 지난 회의의 결정사항으로서 전용차량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를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해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음. 직무성과금 지급, 직급보조비 증액 외에 실질적인 보완조치가 검토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음
- 전용차량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고등부장 49명에게 의견을 여쭙은 바, 대부분의 고등부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직무성과금 확대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었지만 실질적인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있었고, 몇 가지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전달하라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음.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전용차량 폐지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조치가 없는 것은 법원조직법 개정 부칙의 취지에 반하는 법률위반 상태라는 의견이 있었고, 수원, 인천 등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고등부장에게는 예측 못한 불이익이 심각하기 때문에 전용차량 중 일부를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하여 카풀 방식으로라도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고



등부장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했음

- 위와 더불어 원로법관에 한해서는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몇 분 계셨음. 고등부장에 대한 전용차량 폐지가 불가피하더라도 원로법관에 한정해서는 전용차량을 유지하는 것이 고등법원 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관 인사의 좋은 방향이고 일반 국민 역시 이에 대해 수긍할 것이라는 주장인데, 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3 제3항이 문언상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예우를 하는 것은 의무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법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령상의 이유는 물론, 원로법관 제도를 정착시켜야 모든 법관이 원로법관으로 정년퇴직하는 것을 목표로 좋은 재판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이 그 근거임
- 오늘의 논의 안건은 직무성과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고등부장의 예우상의 변화를 그 이유로 들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고등부장의 박탈감, 상실감을 본인이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윤준 위원의 답변, 의장의 재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오늘의 논의 안건은 직무성과금의 확대이므로 전용차량 폐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집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함
 - 윤준 위원님께서도 결론적으로 직무성과금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취지이신 것인지?
- 윤준 위원
 - 직무성과금 확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고등부장의 급여가 소폭 상승하는 정도로만 보완조치가 된다면 결국 고등부장의 지위가 강등되는 것이라는 고등부장들의 의견을 전하고자 함
- 의장
 - 그에 대한 부분은 추후 논의하거나 정식 안건으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음. 오늘은 직무성과금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인은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음
- 본인은 처음부터 고등부장이 아닌 16호봉 이상 법관들에게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고등부장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전용차량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고등부장에게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음. 그런데 전용차량이 폐지되자마자 16호봉 이상 법관들에게 직무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 16호봉 이상 법관들에게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움. 결국 단일호봉제 하에서 고등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16호봉 이상 법관들을 기존에는 차별대우했다는 것을 우리 법원이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16호봉 이상 법관들은 상대적으로 기본급 인상률 등이 저호봉 법관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직무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기존의 논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획조정실의 검토의견이 정등급에 해당하는 젊은 법관들의 직무성과금 지급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본인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초기부터 젊은 법관 및 15호봉 이상 법관들로부터 직무성과금 지급기준 개선을 요청받았음. 15호봉 이상 법관들은 고등부장과 보수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호봉 승급에도 불구하고 직무성과금을 적게 지급받는 것은 단일호봉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젊은 법관들은 법조일원화로 인해 3년 또는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사법연수원 특정 기수 이하 법관들은 만년 정등급에 해당되는 직무성과금을 받게 되므로 굉장히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번 개선안은 젊은 법관들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주고 있지 않음. 그런 상황에서 전용차량 폐지와 동시에 16호봉 이상 법관들에게 직무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저호봉 법관의 직무성과금이 줄어드는 결과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난감한 입장임
- 마지막으로 직무성과금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직무성과금은 그 성격상 법관의 직무와 잘 어울리는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성과금 제도를 도입한 이상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급기준을 설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현재의 직무성과금 지급 기준은 호봉제와 연관이 있어 연공서열식 기준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수행상 성과에 따라 보수에 차등을 두겠다는 제도의 근본 취지와 완전히 배치됨.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 직무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유만으로 지급기준을 연공서열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같은 업무를 하는 민사단독 지법부장과 단독판사 간 그 업무와 책임, 직무성과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봉 차이에 의해 직무성과금을 달리 지급하고, 호봉이 같은 판사들이라 할지라도 선호 재판업무와 비선호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판사 간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이 같다고 할 수 없음에도 호봉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직무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직무성과금 제도의 근본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임
- 요약하자면 호봉제와 연계하여 연공서열을 바탕으로 한 종전의 지급기준을 전제로 16호봉 이상 법관들에게 직무성과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 반대하고, 직무성과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16호봉 이상 법관들을 포함하여 그 업무와 책임에 비례하는 새로운 직무성과금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본인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 새로운 직무성과금 지급 기준 마련에 관한 안건 회부를 요청함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최한돈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최한돈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추후 답변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지금 의제인 16호봉 이상 법관에 대해 직무성과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인지?
- 최한돈 위원
 -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임. 기획조정실에서 마련한 기준은 정등급에 해당하는 법관들의 지급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 의장



-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 최한돈 위원
 - 그런 취지로 볼 수 있음. 기획조정실에서 마련한 16호봉 이상 법관들에 대해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논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함. 하지만 본 논의가 정등급의 젊은 법관들의 기준 변경 요구는 전혀 반영함이 없이 고등부장 전용차량 폐지와 연관되어 16호봉 이상의 법관들에 대해서만 새롭게 직무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등급 젊은 법관들의 직무성과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바임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제시된 논거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 방안에 찬성함
 - 최한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성과금 지급 대상은 확대를 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 역시 찬성함. 직무성과금 지급 기준에 대한 젊은 법관들의 인식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오늘 안건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 여부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된 안건을 토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사무분담 등을 고려한 새로운 직무성과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내년 이후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전용차량 폐지 논의는 과연 전용차량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의식에 기해 예산을 조금 더 적절히 사용하고 법관에 대한 보수를 현실화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문제의식에 기한 것이지, 고등부장에 대한 기존의 예우를 줄이자는 취지는 아니었음
 - 다만, 종전 고등부장들의 혜택 상실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논의하는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등부장 법관의 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리라 생각함



- 최한돈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익 침해 정도를 비교했을 때 그 이익은 고등부장 전용차량을 폐지함에 따른 손해와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음. 따라서 본인은 근본적으로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안에 찬성을 함. 다만, 전용차량 폐지에 따른 급여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도록 다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질문 및 의장의 답변, 오승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오승이 위원

- 전용차량 폐지 논의 시 보완책으로 이야기되었던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해도 보수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지?

○ 의장

- 그렇다고 함

○ 오승이 위원

- 일단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님. 하지만 본 안건이 전용차량 폐지에 따른 보상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는데, 전체 직무성과금 총액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결국 호봉이 낮은 판사의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직무성과금 감액 지급에 따른 보상부터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적어도 예산을 확보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기존의 지급액을 감액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저 연차 판사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상당히 큼. 중요한 정책결정 혹은 의사결정은 고위법관이 결정하고 자신들은 항상 소외되어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무력감과 소외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무성과금을 삭감하고, 또한 삭감의 이유가 결부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 전용차량 폐지에 따른 고위 법관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동료 법관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음
- 최한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기준을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에 의해 나누거나, 등급 간 순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전 법관에 대해 동일하게 지급하는 등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16호봉 이상 법관에게 직무성



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 지급액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전용차량 폐지 문제는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재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되긴 했으나 전용차량 폐지 때문에 본 안전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2019년 12월 말 기준 16호봉 이상 법관 중 고등부장이 106명, 고등부장이 아닌 법관이 157명인데 고등부장 아닌 16호봉 이상 법관의 비율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 보고서의 추정인 것 같음. 2012년 이후 전체 법관 인원을 기준으로 직무성과금 예산이 편성되었고, 법관 기본급 인상률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12년부터 16호봉 이상 법관들에게도 직무성과금을 지급했어야 하는 사안인 것 같음. 미지급의 여러 정책적 이유가 있겠지만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라도 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게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된 것 같음
- 기존의 15호봉 이하 법관들은 16호봉 이상 법관이 늘어남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서 몇 년 간 직무성과금 지급액이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직무성과금의 원래 취지에 맞게 바로잡는 과정에서 지급액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15호봉 이하 법관들도 충분히 수궁할 수 있을 것 같음
- 다만 최한돈, 오승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법관이 계속해서 낮은 등급의 액수를 받는 등 지급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검토를 통해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싶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여쭙지는 않았지만 전용차량이 폐지됨에 따른 보완책으로 직무성과금을 받게 됨으로써 젊은 법관들의 직무성과금 지급액이 줄어든다면 선배 법관 입장에서 상당히 면구스러워서 직무성과금을 흔쾌히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음. 또한 후배 법관 입장에서 그나마 직무성과금으로 노고를 보상받는데 전용차량 폐지로 인해 그 지급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납득하기 힘들 것임
- 결국 전용차량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직무성과금과 상관없는 실질적인 보완조치가 마련된다면 고등부장들도 직무성과금 지급 확대를 반대하거나 자진해서 수령을 거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고등부장 전용차량 폐지와 관련되어 이 부분이 자꾸 논의가 되서 사실 불편한 감이 없지 않음. 제도의 취지는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등부장 전용차량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연관되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면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안이 전용차량 폐지에 따른 보완책의 원칙적인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음. 다만 법원의 경우 검찰과 달리 2년 6개월의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용차량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본 사안은 고등부장제 폐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보상 문제, 향후 16호봉 이상 법관이 증가함에 따른 현행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범위의 확대 필요성, 최한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과 위주의 직무성과금 지급 기준 마련 등 여러 쟁점이 혼재되어 논의되는 것이 아닌가 싶음
- 오늘의 의제는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부장 폐지에 따른 보상 문제나 직무성과금 지급기준 검토는 비록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약하다고 생각함
-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에는 본인 역시 찬성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급대상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관련된 다른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이 있었음

- 의장
 -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전반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음
- 기획조정실장
 - 법원조직법 및 법관 보수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개정으로 단일호봉제를 채택한 이후 동일 호봉이라면 고등부장과 지방부장의 보수와 수당은 동일함. 따라서 같은 호봉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부장과 지방부장의 지급액이 다르게 되는 경우



현재의 보수·수당 체계와 맞지 않음. 다만 직무성과금은 보수의 후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원되는 경비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당초 직무성과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재판 업무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금 형태로 보수를 올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서 거부하다가, 결국 직무성과금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어느 정도 연공서열에 따라 직무성과금을 지급하되 일정 호봉이 되면 직무성과금을 줄이거나 아예 지급받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법관 개개인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재판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법권의 본질적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재판의 종류에 따른 차등을 두기 위해서도 계량적으로 업무량 등을 어떻게 추출할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무성과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간단치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드나 전체 법관의 평균 호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경력법관제 도입 이후 상당한 경력을 지니고 법관으로 임용됨에도 낮은 등급의 직무성과금을 받게 되어 평생법관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사실 작년 전용차량 폐지 논의가 나오기 이전부터 16호봉 이상에 대한 직무성과금 확대 지급을 검토해 왔음
- 직무성과금 총액은 9호봉 법관의 전년도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법관 인원을 합쳐 결정되는데, 작년부터 전체 법관의 호봉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준 호봉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기준 호봉을 올리지 못하고 대신 작년과는 달리 결원율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 직무성과금 총액을 배정받은 상태임
- 기준 호봉을 10호봉으로 올리게 되면 젊은 법관의 지급액을 감액하지 않고도 16호봉 이상의 법관들에게 직무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정등급 법관에 대한 지급액이 다소 감액되는 측면이 있는데, 법원행정처나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어



떻게 될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기획조정실장의 설명, 의장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의장

- 기초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직무성과금이 도입될 당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들었음. 행정부 공무원이나 사기업처럼 법관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는 법관별로 판결 처리 건수에 의해 나누자는 주장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법관의 업무를 정량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공서열에 의해 직무성과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임
- 기준 호봉을 높여 전체 예산을 배정받으면 호봉이 낮은 법관의 직무성과금 지급액 감액 없이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음 일이고, 우리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상황에 따라 더 지급하는 것 외에 무리해서 이 때문에 행정부에 예산을 더 요청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음
- 본인 역시 직무성과금을 받은 지 오래됐지만 지금의 지급 기준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 들긴 하나, 현실적으로 지급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기획조정실장님 말씀과 같은 입장임
- 일단 오늘 위원님들께서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의 적절한 검토 주체 및 방향에 대해서 향후 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음

○ 기획조정실장

-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해 연도 상반기 직무성과금 지급안은 전년도 하반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올해 내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내년 상반기에 적용하더라도 변경된 기준에 따른 실제 지급은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됨.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급 기준을 다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4월 직무성과금 지급에는 적용될 수 없고 빨라도 내년 하반기, 즉 2021년 10월 지급 시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임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 기획조정실장의 설명



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15,000여 명에 달하는 법원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
- 법관의 직무성과금에 이어 법원공무원의 성과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행정 전반적으로 너무 법관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을 수 없음.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임기제, 청원경찰 등 다양한 직군별로 어떻게 성과금이 지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급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

○ 의장

- 그렇다면 법원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기준과 절차를 다음 회의 때 제출하도록 하겠음

○ 기획조정실장

- 법관의 직무성과금은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에서 담당하지만, 법원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각 법원 단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관련 사항을 결정함. 법원공무원 성과금의 지급 개요 및 프로세스를 취합해서 다음 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16호봉 이상 일반법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고,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의 연구·검토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음

다. 결정사항

-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16호봉 이상 일반법관’으로 확대함이 바람직함
- 지급기준 등 향후 시행될 세부적 사항의 연구·검토 계획에 관하여 12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함

4.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료 공개여부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의결하였음

5.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9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 할 부분이 없다고 의결함

※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 배진호 인사심의관, 강정현 인사담당관, 서현웅 사무관(서기)를 제외한 운영지원단원 퇴장

6. 판사의 보직인사 관련 안건에 관한 논의(소관: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 기초발제

- 현장 제시한 별도 자료에 의하여 2021년 정기인사 8개 보직인사안에 관하여 보고함

나. 논의

▣ 의장

- 안건 부의 배경을 설명함
- 2021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아래의 8개 안건을 부의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함
 - ① 지원장 선발, ②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③ 현재 파견연구관 선발, ④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⑥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⑦ 고법판사 신규 보임, ⑧ 장기근무법관 선정

다. 결정사항

▣ 2021년 정기인사의 8개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 대상으로 함이 바람직함. 위 보직인사의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함

기존 보직인사안 6개(가사소년전문법관, 현재 파견 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연수



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법판사 신규 보임) + 추가 보직인사안 2개(장기 근무법관 선정, 지원장 보임)

7. 2021년 정기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 선정(소관: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권순형 분과위원장 기초발제

- 현장 게시한 별도 자료에 의하여 2021년 법관 정기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 선정에 대한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연구결과에 관하여 보고함
 - ①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 선정기준에 관한 검토(정책적 고려 요소 및 구체적 선정기준 검토), ② 2021년 법관 정기인사 시 시범실시 대상 법원에 관한 검토

나. 논의

-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 선정기준 및 2021년 법관 정기인사 시 시범실시 대상 법원 선정 범위에 관하여 논의

다. 결정사항

- 2021년 정기인사에서는 전국 7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함이 적절함. 다만,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 보임 방식에 관하여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추가 연구·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함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지방법원 2개(의정부, 대구) + 신규 시범실시 지방법원 5개(서울회생, 서울남부, 서울북부, 부산, 광주)

-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체적인 로드맵에 관한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위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도록 함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0차 회의(정기회의)

- 일시: 2020. 12. 10.(목) 14:00



▣ 장소: 대법원(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진행 가능)

(끝)